

(별지 제2호 서식)

담당부서	용도의 사용(양도·양수·임대) 등 승인신청(승인)서			처리 기간	
담당과장				4 일	
담당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세울적용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감면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납부물품				
연락처					
신청인	상 호				
	대표자 성명	(서명 또는 인)	사업자 번호		
	주 소			사업의 종류	
<b>1. 양수도인 명세</b>					
양도인	상 호			통관고유부호	
	대표자 성명	(서명 또는 인)	사업자 번호		
	주 소			사업의 종류	
양수인	상 호			통관고유부호	
	대표자 성명	(서명 또는 인)	사업자 번호		
	주 소			사업의 종류	
<b>2. 용도의 사용(양도·양수·임대) 등 물품 명세</b>					
HS번호	품명·규격	수량	당초감면 (분납)법조항	관세감면(분납)액 (적용용도세율)	이미 납부한 관세액
통관지 세관명	수입신고수리 연월일	수입신고번호	당초 설치장소		당초용도
<b>3. 승인 신청 이유</b>		<b>4. 변경후 사항</b>			
		양수인의 감면 (분납)법조항	설치장소 (부서명, 전화번호)	새로운 용도 (동일용도 양도시는 당초용도)	
<p>「관세법」 제83조제2항, 제88조제2항, 제97조제2항, 제98조제2항, 제102조제1항, 제103조, 제107조제3항,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, 제120조제1항, 제128조, 제1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의 사용 등 승인신청하오니 승인(확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○○ 세 관 장 귀하</p>		<p>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의 사용 등 신청을 승인(확인)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 ○○ 세 관 장 직인 귀하</p>			
<p>* 구비서류 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서 1부(양수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는 2부)</li> <li>양수도(임대차)계약서 사본 1부(양수도·임대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 1부(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(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)</li> <li>수입요건 확인서류(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의 사용 등으로 인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)</li> </ol>				수수료	
				없 음	

※ 유의사항 등 : ① 승인 신청 이유에는 용도의 사용·양도·양수·임대·면제 등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② 양수도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